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0
----------	-----

2024. 4. 30.(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4월 23일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정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의 1인가구 비중이 36%로 전국평균 34.5%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다인세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비함.

※ 충북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증가 현황: 28.3%(15) → 36.0%(22)

-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증가 추이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에 있어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가구”, “공유주방” 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1인가구 지원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 7조)
-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1인가구 실태조사, 지원 사업 및 시설 운영 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의 1인가구 비중('22년 기준)이 36%로 전국평균 34.5%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충북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증가 현황: **28.3%('15) → 36.0%('22)**

<충청북도 1인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가구수	613,004	630,578	643,006	656,101	670,865	695,948	713,434	724,108
1인가구수	173,598	187,377	195,186	204,109	215,196	236,208	252,251	260,948
1인가구 비율(%)	28.3	29.7	30.4	31.1	32.1	33.9	35.4	36.0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다인세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에 대한 정책지원 미비함.

※ 충북은 별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없음. 서울시는 '1인가구담당관' 신설

○ 2047년 전국 1인가구 비중 40% 추정(통계청)으로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1인가구 증가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됨.

○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에 있어 체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13개 시·도** 제정·시행 중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구분	조 문	규 정 사 항	구분	조 문	규 정 사 항
총칙 규정	제1조	목적	실체 규정	제8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9조	지원사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0조	1인가구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협력체계
실체 규정	제5조	지원대상	보칙 규정 부칙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시행일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 “1인가구”에 대한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¹⁾에 규정된 정의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공유주방”은 다가구들이 부엌(주방)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한 분야에서 유래된 개념이지만, 본 조례에서는 단순한 부엌(주방) 공유를 넘어 소셜 다이닝(Social-Dining)²⁾의 의미를 포함해 정의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를 정한 것으로 그 대상을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까지 확대하였음.
 - 학업 및 직장 등의 이유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채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20~30대가 충북 1인가구 비중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한 것으로,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행정편의 및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 문제가 없음.

- 안 제8조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Social Dining: 사람들이 누군가의 장소 등에 모여 식사를 즐기고 어울리기 위해 만나는 것

- 지역 실정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성 회복,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및 돌봄, 경제적 안정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는 1인가구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충청북도 내 1인가구 현실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에 있어 체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었고, 집행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 충청북도 1인 가구 연령별 현황 (2015년 ~ 2022년)

○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70대 이상(20.1%) > 20대(18.2%) > 60대(17.9%) > 50대(16.1%) > 30대(15.0%) > 40대(11.9%) 순으로 나타남.

연령대	연도								% ('22 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73,598	187,377	195,186	204,109	215,196	236,208	252,251	260,948	100
20세 미만	2,091	2,709	2,498	2,301	2,560	4,594	2,935	1,947	0.7
20~24	13,134	17,006	16,619	16,763	18,411	22,598	20,114	17,565	6.7
25~29	15,793	17,425	18,415	20,427	22,975	26,232	29,310	29,960	11.5
30~34	14,581	15,017	15,202	15,496	16,506	18,521	21,237	23,588	9.0
35~39	11,747	11,968	12,692	13,449	13,988	14,585	15,639	15,742	6.0
40~44	12,534	12,031	12,513	12,468	12,328	12,949	14,131	15,163	5.8
45~49	13,456	14,167	14,670	14,882	15,000	15,312	15,714	15,880	6.1
50~54	15,030	15,145	15,245	16,192	17,124	17,924	19,609	20,140	7.7
55~59	15,918	17,686	19,111	19,395	19,391	20,327	21,147	21,806	8.4
60~64	12,585	14,740	16,041	17,944	19,324	21,150	24,239	25,782	9.9
65~69	10,342	11,129	12,095	12,818	13,952	16,282	19,261	20,951	8.0
70~74	11,690	11,505	11,405	11,712	11,982	12,642	13,544	14,792	5.7
75~79	11,737	12,325	13,138	13,388	13,301	13,505	13,479	13,375	5.1
80~84	8,328	9,280	9,912	10,528	11,244	11,514	12,457	13,665	5.2
85세 이상	4,632	5,244	5,630	6,346	7,110	8,073	9,435	10,592	4.1

□ 충청북도 1인 가구 연령 및 성별 현황 (2022년 기준)

연령대	2022년			여성비중(%)
	합계	남성	여성	
합계	260,948	136,768	124,180	47.6
20세 미만	1,947	1,051	896	46.0
20~24	17,565	8,861	8,704	49.6
25~29	29,960	18,646	11,314	37.8
30~34	23,588	16,421	7,167	30.4
35~39	15,742	10,900	4,842	30.8
40~44	15,163	10,230	4,933	32.5
45~49	15,880	10,195	5,685	35.8
50~54	20,140	12,222	7,918	39.3
55~59	21,806	12,217	9,589	44.0
60~64	25,782	13,090	12,692	49.2
65~69	20,951	9,229	11,722	55.9
70~74	14,792	5,369	9,423	63.7
75~79	13,375	3,413	9,962	74.5
80~84	13,665	2,871	10,794	79.0
85세 이상	10,592	2,053	8,539	80.6

□ 충청북도 1인 가구 성별 및 거주 종류별 현황 (2022년 기준)

성별	2022년							
	1인 가구	주택_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_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계	260,948	246,828	134,174	98,953	4,428	5,692	3,581	14,120
남자	136,768	127,947	74,615	46,603	1,880	2,878	1,971	8,821
여자	124,180	118,881	59,559	52,350	2,548	2,814	1,610	5,299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방”이란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3. 공유주방 등 식생활 공동체 지원
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5. 1인가구의 외로움 예방, 돌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6.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7.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연구·조사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 유지 기능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도모
- 1인가구 범죄로부터의 안전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제공

2. 비용 발생 요인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1인가구 대상 안전시설 환경 구축 지원

3. 관련조문 (안 제9조)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9조제1항제2호)
- 1인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제9조제1항제4호)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내 거주하는 1인가구 관계형성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나. 추계 결과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사업비 : 56,570천원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 : 22,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 및 시군 매칭 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		-	-	-	-	-	-
세 출		886,570	78,570	202,000	202,000	202,000	202,000
1인가구 사회 관계망 조성지원		776,570	56,57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		110,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886,570	78,570	202,000	202,000	202,000	202,000
	세외수입	886,570	78,570	202,000	202,000	202,000	202,000